

대학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제공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Services Model for Disabled Users in University Libraries

정 재 영(Jae-Young Chung)*

〈 목 차 〉

I. 서론	III. 대학도서관 장애인 시설 및 서비스 현황
II. 이론적 배경	IV. 대학도서관의 효과적인 장애인 서비스 제공 방안
1.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의 의의	V. 결론
2. 대학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의 필요성	

초 록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현황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학의 장애인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해짐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지원 시설,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사결과, 많은 대학도서관의 경우 이와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법률적 기반이나 기준에 근거한 대응방안의 마련보다 부분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각각의 대학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모든 자료를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전담사서 지정에 의한 서비스 제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단체, 협회 및 특수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홈페이지를 이용한 장애인 서비스의 안내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이용안내서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키워드: 대학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장애인학생, 대학도서관 서비스

ABSTRACT

There has been almost studies focused on public library in the provision of the use and needs of library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y. However, the number of disabled students are rising steadily in university library. So university libraries must make reasonable efforts to give disabled people the same access to information, programs and resources enjoyed by those who are not disabled.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despite most university library already is recognized the necessity offering service for disabled, however,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of services for disabled, legal standards rather than to have made only partial support to them. Therefore, librarians for the disabled in every sector(library-related organizations, groups, and association) hav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olicies and financial support them. Also, active guidance and public relations about library services,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for the disabled by using homepage, and the arrangement of librarians for the disabled and education for them should be supported for improving library services for the disabled student.

Keywords: University Library, Library Services for the Disabled Users, Disabled Students, University Library Service

* 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관리운영팀장(jaeyoung@sogang.ac.kr)

• 접수일: 2009년 2월 20일 • 초심사일: 2009년 2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9년 3월 21일

I. 서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대학도서관 역시 대학구성원의 학문발전과 연구지원을 위하여 대학구성원의 육체적 장애와 성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에 따른 불편이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 12월에 전국 4년제 2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평가결과를 장애학생 교육여건 조성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과 연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지원과 서비스는 주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점차 장애학생들의 대학 입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도서관도 더 이상 논의를 미루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이고 간헐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지원방법이나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와 서비스를 위한 모델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특별한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아닌 기본적인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제까지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장애학생들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의미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and Institutions)의 지적 자유에 관한 선언에는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들이 동등하게 자료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인종, 신념, 성별, 나이 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되어서는 안된다'¹⁾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선언에는 도서관의 접근과 이용이 개인적인 특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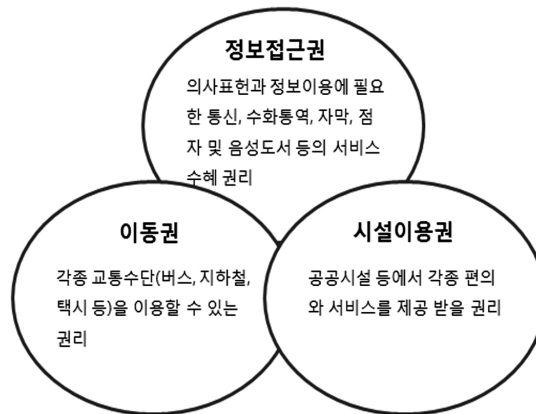
1) IFLA 지적 자유에 관한 선언, <http://www.ifla.org/faife/policy/iflastat/iflastat_kr.htm> [cited 2009. 2. 5].

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도서관법 제43조²⁾에는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서관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및 시설의 설치는 예외사항이 아닌 도서관의 당연한 의무이며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윤희윤³⁾은 장애인의 근본적 권리인 접근권(Rights to Access)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장애인의 접근권 개념과 구성

(출처: 윤희윤, 2007, p.91)

<그림 1>과 같이 장애인의 접근권은 사회전반에 걸쳐 기회균등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며, 교육, 노동, 문화활동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이동권과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이용권, 그리고 대체자료를 통한 의사표현 및 정보이용의 서비스 수혜에 관한 정보접근권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공공시설인 도서관은 장애인들의 이용을 위해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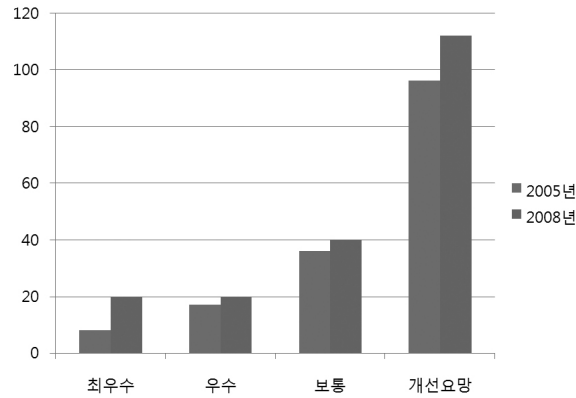
2008년 12월 192개 대학(148개 4년제 대학과 44개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교수·학습, 시설·설비 총 3개 영역에 대한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림 2>와 같이 최우수 대학이 20개 대학, 우수 20개 대학, 보통 40개 대학, 그리고 개선요망 대학이 112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⁴⁾

2) 도서관법,

<http://www.korla.or.kr/data/notice/view.asp?pkid=644&page=1&searchField=&searchValue=&BBSCode=N0011> [인용 2009. 2. 4].

3) 윤희윤,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협력망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7), p.81.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1호)



〈그림 2〉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비교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2005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대학이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도 장애인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 및 시설에 있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조사 항목 중 교육과 연구의 핵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은 시설·설비 영역 총 50점 중 단 3점으로 배점되어 있어 본 조사와 도서관 편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현황 및 수준을 연계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도서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장애 즉,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사람이나 도서관에 올 수 있어도 지체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도서관 내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없거나, 서가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낼 수 없는 이용자 등이 포함된다.

둘째, 자료적 장애 즉, 도서관의 자료를 있는 그대로 이용할 수 없는 장애를 말한다. 시력이나 시야에 장애가 있어 눈으로 책을 볼 수 없거나,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들거나 페이지를 넘기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문자에 대한 이해력 부족으로 책을 읽을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셋째, 커뮤니케이션 장애 즉, 대출이나 참고봉사, 도서관이 주관하는 각종 프로그램 참가 등의 서비스를 받을 때 도서관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를 말한다.⁵⁾

이와 같은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 이용에 따른 편의시설 관련 규정들이 제정되어 왔으며, 2008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서비스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제

4) 2008년도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ms_kor/news/notice/broadcast/1258113_8083.jsp〉 [인용 2009. 3. 12].

5) 김영기, 이연옥,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구성요소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2008), pp.93-94.

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기, 이연옥은⁶⁾ 장애인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지침과 성명속에 포함된 구성요소를 분석해 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첫째, 도서관 내외부의 물리적인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
- 둘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자료 개발을 통한 접근 가능 장서 구축,
- 셋째,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적 혜택 제공,
- 넷째,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조공학기기의 구비,
- 다섯째, 도서관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반으로 웹접근성 확보,
- 여섯째,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의 배치 등과 같은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자원의 개발 및 활용,
- 일곱째, 단위 도서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 마련.

즉,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는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편의시설 및 정보제공 업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개 도서관의 노력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과 관련 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⁷⁾

2. 대학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의 필요성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수는 <표 1>과 같이 총 3,837명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매년 일정정도의 장애인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점차 장애인 재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상계논문, pp.102-105.

7) 관련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및 도서관연구소 운영방안 연구(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6).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증장기 발전계획(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7).

〈표 1〉 대학 장애학생 현황

(2008. 4. 1 기준)

구 분	학교수	장애학생 수(명)				
		1~3급	4급	5급 이하	계	
대학 (대학원)	국·공립	26	446	91	259	796
	사립	98	1,589	196	470	2,255
	소계	124	2,035	287	729	3,051
전문대학	국·공립	6	148	7	18	173
	사립	65	419	60	134	613
	소계	71	567	67	152	786
계	195	2,602	354	881	3,837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9)

〈표 2〉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학년도	전 문 대 학		대 학 교		합 계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1995	2	6	6	107	8	113
1996	2	16	16	201	18	217
1997	6	42	30	234	36	276
1998	6	57	39	298	45	355
1999	6	47	40	349	46	396
2000	9	55	48	313	57	368
2001	11	61	43	360	54	421
2002	15	194	46	420	61	614
2003	14	117	47	310	61	427
2004	24	115	49	309	73	424
2005	11	45	53	344	64	389
2006	10	31	63	388	73	419
2007	9	79	71	439	80	518
2008	8	100	74	460	82	56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8)

〈표 2〉와 같이 조사가 시작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장애인 학생의 대학진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대학보다 종합대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대학차원에서 볼 때 전체 학생 수 대비 장애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편의시설 및 각종 지원에 대폭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을 위해 점자블럭을 설치하거나 유도 및 안내 설비,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 확대기나 컴퓨터 등을 구비하는 등의 지원이 미진한 실정이다.

2007년 서울지역 41개 4년제 대학도서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보고서⁸⁾에 따르면, 총 9

8) 장향숙, “서울소재 41개 4년제 대학도서관 편의시설 실태조사보고서,” 2007 국정감사자료(2007. 10. 23).

개 항목(출입구, 경사로, 화장실, 열람석, 접수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승강기, 확대기 또는 컴퓨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결과, <표 3>과 같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대학도서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서울소재 4년제 대학도서관 편의시설 설치 등급별 현황

	해당 대학
1등급	-
2등급	-
3등급	고려대학교
4등급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총신대학교
5등급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성대학교
6등급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7등급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8등급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9등급	광운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경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경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홍익대학교, 숭실대학교
10등급	그리스도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 9개 항목 모두 충족시 1등급, 충족 못할 시 10등급으로 처리.
 * 각 항목의 세부내용 중 하나라도 규격에 맞지 않으면 부적합으로 처리.
 (출처: 장향숙, 2007)

조사결과, 장애인용 열람석을 설치한 대학도서관이 4곳으로 조사되었으며, 별도의 접수대를 설치한 대학도서관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및 재난시 장애인들의 대피를 위한 유도 및 안내설비의 경우 3개의 대학도서관만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편의시설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저시력 이용자 및 시각장애인이 도서관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시력 이용자용 컴퓨터의 경우 4개 대학도서관에만 비치되어 있어 장애인 학생들의 도서관을 통한 정보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실태 조사 결과 관련법의 규정이나 규격에 맞춰 설계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구의 경우 통과 유효폭이 0.8m가 되지 않아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거나, 경사로의 폭이 좁고 각도가 높아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조사되었으며, 점자블록의 경우 화장실 앞에 아예 없거나 계단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의 경우, 기존의 화장실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폭이 좁고 깊이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와, 문이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화장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열람석의 경우 설치 및 크기가 규정에 미달하거나, 승강기도 장애인 전용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0권 제1호)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시설 및 장비가 일정한 법률적 기준에 의해 구비된 것이 아니라 개별 대학도서관의 재량과 편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용의 보편성과 정보의 공유라는 도서관 설립 목적에 맞게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지원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에 설치해야 할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준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이용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대학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치기준

대상시설	세부시설	의무사항 여부	기타(설치 세부사항)	
매개시설	주 출입구 접근로	의무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폭 0.8m 이상 확보,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m 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의무	330cm 이상 유도표시, 주차구역안내 표시: 바닥과 전면에 입식으로 표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의무	폭 1.2m 이상, 기울기 1/18 이하(도우미가 있는 경우 예외)	
내부시설	출입구(문)	의무	유효폭 1.2m, 출입문구조: 가능한 자동문	
	복도	의무	바닥재: 미끄럼방지재질, 유효폭: 1.8m 이상 벽면: 핸드레일설치 85cm ±0.5cm, 레일직경 3.2cm~3.8cm	
	계단 또는 승강기	의무	유효바닥면적 vvr 1.1m이상, 길이 1.35m 이상,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스위치 높이 바닥면에서 0.8~1.2m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의무	출입문 외부공간: 140cm, 화장실 출입문 유효 폭: 80cm 이상, 소변기 주변 손잡이 설치: 수평손잡이(바닥면에서 높이 80cm, 수직 손잡이: 높이 110cm 내외에 수평으로 50cm 수직 25cm 벽면으로부터 돌출 부착) 바닥재질: 미끄럼방지 재질, 대변기: 양변기, 좌대의 높이: 40~45cm, 대변기 주변 손잡이 설치: 높이 70cm, 대변기의 고정 손잡이: 변기 중심에서 45cm 측면 설치, 세면대설치: 85cm 이하(학교과정별 조정), 화장실 보조의자 설치: 접이식, 벽면식, 수납형 보조의자 설치
		소변기	의무	
		세면대	의무	
안내시설	점자블록	권장	색상: 황색계열, 크기: 30cm * 30cm, 형태: 선형블록가 돌출점, 설치장소: 통행로, 자동문, 여닫이문, 계단, 승강기, 화장실, 등	
	유도 및 안내설비	권장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2. 음성안내장치, 3. 기타 유도신호장치	
	경보 및 피난설비	권장	눈에 잘 띄도록 설치	
기타시설	열람석	의무	전체 열람석수의 1% 이상	
	접수대	권장	높이 0.7~0.9m,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부는 높이 0.65m, 깊이 0.45m 확보	

<표 4>와 같이 주출입구의 접근로로부터 재난대피시설 및 접수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편의시설은 설치 규격 및 세부설치사항에 맞게 제공되고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도 및 안내설비와 경보 및 피난설비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서관 사용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된 IFLA의 지적 자유에 관한 선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점차 증가하는 장애인 학생 수를 고려할 때 이용의 편의에 대한 시설 뿐만 아니라 화재 및 재난 시 효과적인 대피를 위한 각종 안내 및 유도설비와 경보 및 피난설비에 대한 규정도 필수

9) 장향숙, 상계논문, p.3.

사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Ⅲ. 대학도서관 장애인 시설 및 서비스 현황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시설 및 서비스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지만¹⁰⁾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 및 인력, 그리고 서비스 및 시설에 있어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이란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이용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장애인서비스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지원 장비, 시설 및 제공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대학도서관 장애인 지원 장비, 시설 및 서비스현황

	서비스					장비					시설								
	대출기간 확대	대출배달	반납대행	One-stop 서비스	도우미 지원	저시력 이용 PC	저시력 서기	장애인 전용 검색 PC	전용 Help 전화	목발/휠체어 지원	전용 열람석	전신열람석	전용 사물함	전용 승강기	전용 주차장	유도점블럭	경사로	전용화장실	전용 출입문
서울대 도서관	○	○	○								○				○		○	○	○
연세대 도서관				○		○	○	○			○			○	○	○	○	○	○
고려대학교 도서관		○	○	○	○	○	○	○	○	○			○	○	○	○	○	○	○
서강대 도서관		○		○	○				○		○			○			○	○	○
이화여대 도서관	○	○	○		○										○		○	○	○
숙명여대 도서관				○	○	○	○	○			○			○	○	○	○	○	○
동국대 도서관											○						○	○	○
경희대 도서관	○	○	○	○	○	○	○	○	○	○					○	○	○	○	
서울여대 도서관					○	○	○							○				○	
부산대 도서관		○			○		○										○	○	○
대구가톨릭대 도서관	○	○	○	○	○		○	○	○	○	○	○	○	○	○		○	○	○

10)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공공도서관 564개, 점자도서관 40개, 특수도서관 144개를 조사 대상으로 예산 및 편의시설, 제공서비스 및 전담인력 운영 및 교육실시여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국립중앙도서관,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2007. 9),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장애인 지원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표 5〉와 같이 일정한 기준이나 규정에 따라 서비스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 각각의 대학도서관 재량에 따라 필요서비스 및 시설, 그리고 장비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장향숙의 2007년 조사와 비교할 때 일부 개선된 점은 있지만 전체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 〈그림 4〉는 홈페이지에 장애인 서비스를 게시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안내 화면이다.



〈그림 3〉 S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안내¹¹⁾

11) S대학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안내 화면.
〈<http://lib.swu.ac.kr/dlsearch/TGUI/Theme/Web/main.asp>〉 [인용 2009. 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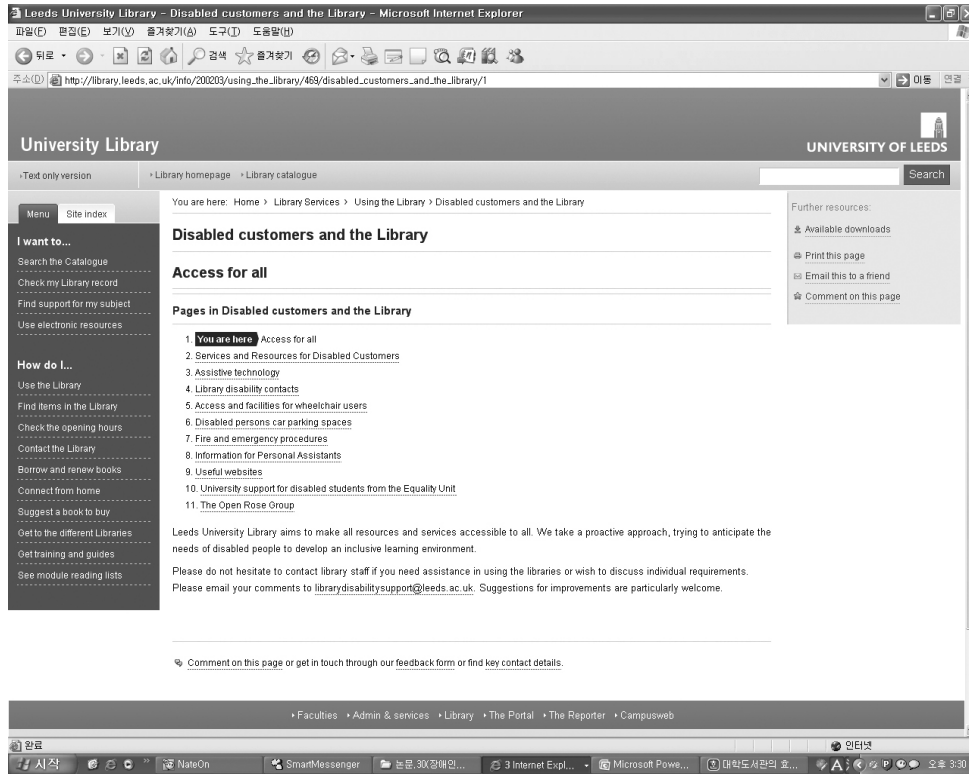
〈그림 4〉 K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안내12)

〈그림 3〉, 〈그림 4〉와 같이 제공되는 내용이 간결하고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며, 홈페이지의 하부 메뉴로 구분되어 있어 찾기가 쉽지 않다. 즉, 장애인을 위한 기본 시설 및 서비스가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제 장애인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장비 등을 인지하고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외 대학도서관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쉽게 서비스 안내를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관련 시설 및 장비, 그리고 서비스에 관해 자세하게 안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는 장애인 지원 시설 및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안내되고 있는 Leeds대학도서관의 화면이다.

12) K대학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안내 화면, 〈http://khis.kyunghee.ac.kr〉 [인용 2009. 2. 6].



〈그림 5〉 Leeds대학도서관 장애인 지원 시설 및 서비스 안내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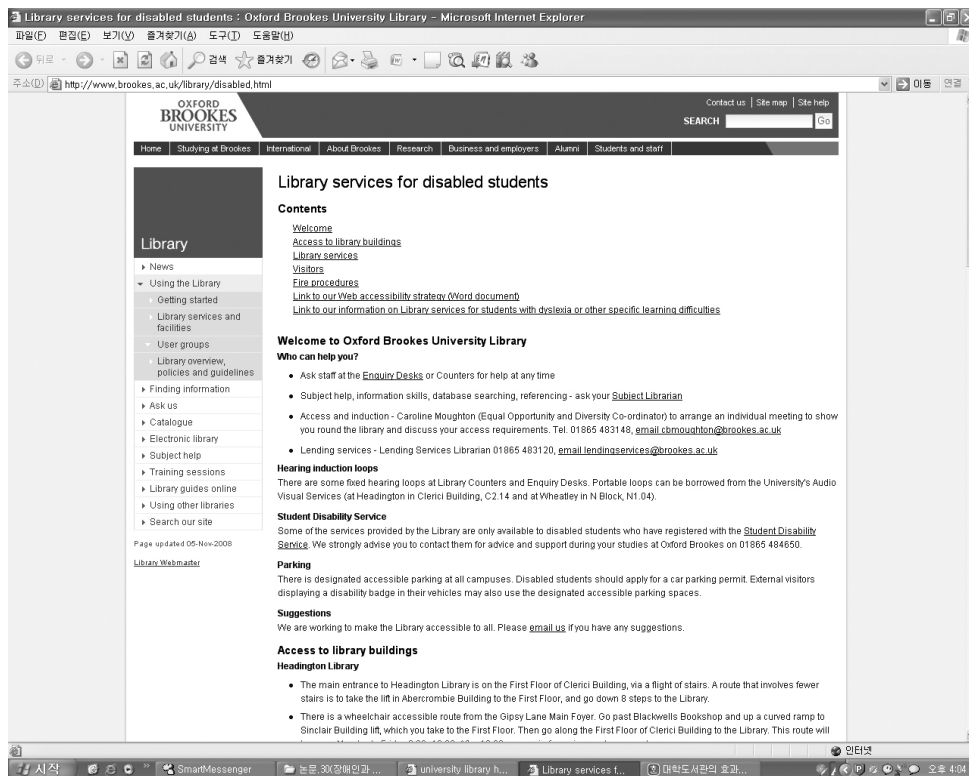
〈그림 5〉와 같이 지원 시설 및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총 11개의 주제별로 나누어 계
공함으로써 장애인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1. 도서관 정책 및 담당자 연락방법 안내
2. 장애인 지원 서비스 및 자료안내
3. 전자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기술적 지원 안내
4. 'Text Phone' 사용을 비롯한 도서관 연락처 안내
5. 휠체어 리프트, 화장실 등을 비롯한 도서관 시설 접근 방법 및 편의시설 이용안내
6. 장애인 주차 위치 및 주차가능대수 안내
7. 재난 및 화재발생시 경보 및 대피방안 안내
8.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Personal Assistants)' 채용 방법 및 자격안내

13) Leeds대학도서관 장애인 지원 서비스 및 시설 안내 화면,
〈http://library.leeds.ac.uk/info/200203/using_the_library/469/disabled_customers_and_the_library/10〉
[cited 2009. 1. 29].

9. 장애인을 위한 유용한 웹 사이트 및 전자자료 안내
10. 장애인 관련 교내 정책 설명
11. 'Open Rose Group'¹⁴⁾ 안내

〈그림 6〉은 Oxford Brookes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지원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안내 화면이다.



〈그림 6〉 Oxford Brookes대학도서관 장애인 지원 시설 및 서비스 안내¹⁵⁾

〈그림 6〉과 같이 Oxford Brookes대학도서관의 경우에도 장애인에 대한 장비 및 시설, 그리고 서비스를 7개의 주제로 구성해 안내하고 있다.

1. 담당자 안내 및 주차안내 등
2. 도서관접근 및 출입방법 안내

14) 'Open Rose Group'은 Yorkshire 지역 대학도서관들이 장애인 이용자들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과 절차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이다.
 15) Oxford Brookes대학도서관 장애인 지원 서비스 및 시설 안내 화면,
 〈http://www.brookes.ac.uk/library/disabled.html〉 [cited 2009. 1. 29].

3. 도서관서비스 안내
4. 도서관 방문시 안내
5. 재난 및 화재발생시 경보 및 대피방안 안내
6. 장애인 이용자의 웹사이트 접근을 위한 도서관의 노력
7. 난독증(難讀症)을 비롯한 특수한 학습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를 위한 안내

특히, 두 대학도서관 모두 장애인을 위한 화재 및 재난시 대피방안(Fire and Emergency Procedures)에 대한 안내와 방법을 게시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편의제공, 교직원 및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현재 31개 대학만이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¹⁶⁾

또한, 동법 제31조(편의제공 등)¹⁷⁾에 따르면 대학은 장애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학습보조기구 등의 물적지원 및 교육보조인력, 그리고 정보접근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에 따라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갖춘 대학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김영기 등¹⁸⁾은 이에 대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는 점자도서관을 비롯한 일부 특수한 도서관의 서비스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 편의시설, 자료, 인력, 예산,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실정이다.
- 도서관의 장애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장애인 서비스를 편의시설 제공 등에 한정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도서관의 적극적인 노력 부족으로 장애인들의 이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 장애인을 위한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가 부족하고 도서관 간 중복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대학도서관의 경우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이해와 예산 등의 문제로 장애인 지원이 효과

16)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2008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2008), p.123.

17) 제31조(편의제공 등)①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18) 김영기,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기준 및 지침 제정 연구(서울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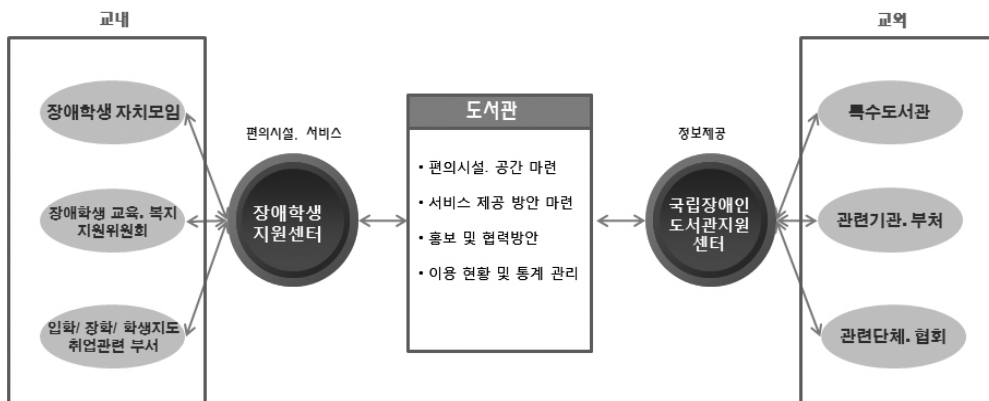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서비스 또한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의 인식전환과 도서관간 협력방안의 마련을 통하여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IV. 대학도서관의 효과적인 장애인 서비스 제공 방안

모든 대학도서관에서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시설을 구비한 후 영상도서, 점자도서, 큰문자도서의 비치 및 제작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점자도서의 경우 일반도서보다 더 많은 소장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간의 부족을 겪고 있는 대학도서관에서 이와 같은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서비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대체자료개발에 대한 가격을 비교해 보면 인쇄자료 평균가격이 9.94파운드 인데 비해 이를 오디오 CD로 제작할 경우 61.66파운드, 비디오 테이프의 경우 평균 35.74 파운드가 소요되어 약 3배에서 6배의 제작가격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도식화하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장애인 지원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

<그림 7>과 같이 대학도서관은 교내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편의 시설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립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및 특수도서관과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국내 각 기관과의 연계는 물론 국내 및 해외거주 미국민과 다른 국가의 도서관 및 단체

19) The Royal National Institute of the Blind, *Overdue: An RNIB Report*(London : RNIB, 2003), p.12.

와도 상호대차를 실시하고 있는 미의회도서관(LC)의 NLS/BPH(National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와의 협력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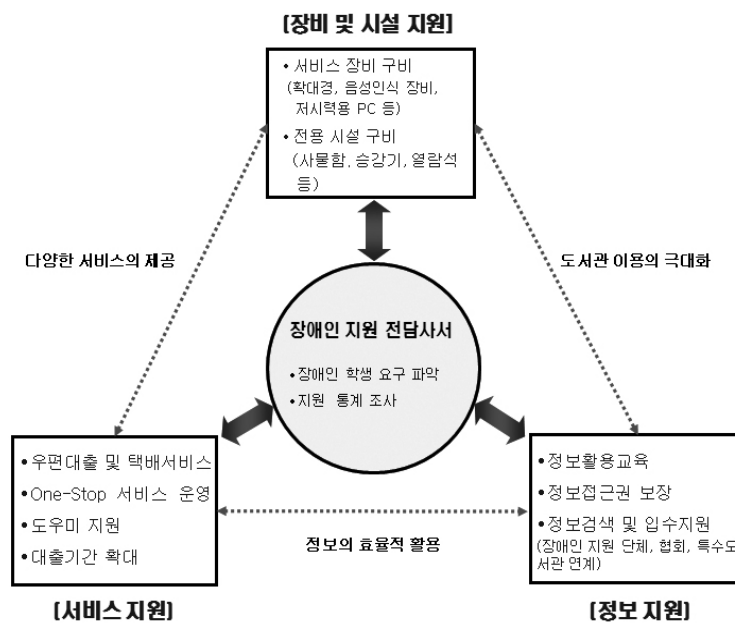
2008년 4월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항목을 추출하여 대응전략을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도서관 관련 법률 조항 및 대응방안

관련조항	내용(요약)	도서관 대응 방안
제4조 (차별행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장애를 사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경우 ②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④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허용, 조장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한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도서관현장(이용자선언) 등에 관련내용 명시 - 장애인과 도서관 커뮤니케이션 통로 확보 - 장애인서비스 담당 사서 지정 및 교육 - 각종 편의시설 점검 (출입구, 이동방법, 화장실, 등)
제15조 (재화,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는 ①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이 해당 재화, 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 유형을 고려한 도서관 이용 안내 팸플릿 제작 -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홍보
제18조 (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① 당해 시설물을 접근, 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②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설물의 접근, 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이동경로 및 재난 시 대피방안 마련
제20조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 법인,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디지털정보의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공 방안 마련
제21조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	① 행위자 등이 생산,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별 도서관 자료 활용방안 마련 (서비스, 시설, 장비 등)
제23조 (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 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이용공간 확보
제24조 (문화, 예술활동의 차별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① 장애인이 문화,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이 문화, 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 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을 위한 정보검색 교육 및 이용안내 오리엔테이션 제공

〈표 6〉과 같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대학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분석하면 공간 및 시설 등의 ‘물리적인 지원’, 정보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자료적 지원’,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에 의한 ‘서비스지원’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학문 및 연구의 효과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는 대학도서관의 특성과 연계시켜 장애인 지원 서비스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대학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모델

즉, 〈그림 8〉과 같이 대학도서관은 우편대출 및 택배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One-Stop 서비스 등을 비롯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장애인지원 담당사서를 지정해 수화교육, 장애인 안내방법 등과 같은 장애인 서비스관련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지원 전담사서는 장애인 학생에 대한 요구를 파악해 정보활용교육 및 정보검색 업무 등의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이용자들의 경우 장애인 지원 전담사서가 바뀔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담당사서도 각 이용자의 특성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서관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담당사서를 지정해 장애 유형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본적인 점자 및 수화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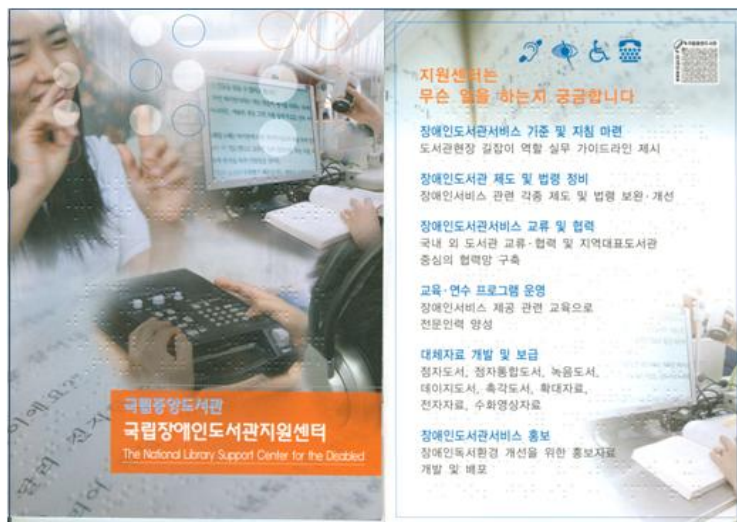
이와 함께, 장애인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출입문을 비롯한 주출입구의 접근로를 확보하고, 복도, 승강기 등 내부시설과 위생시설, 점자블럭을 비롯한 피난 대피시설을 설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크린리더, 화상키보드 등 키보드, 마우스 사용 및 글자입력보조장치 등의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서비스지원 장비를 설치할 경우 장애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같이 둬으로써 일시적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서비스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²⁰⁾

또한,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장애인 지원 시설,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점자와 음성안내가 가능한 이용안내책자를 제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림 9〉는 점자 및 음성안내 장치가 동시에 되어 있는 안내서의 예이다.



〈그림 9〉 점자 및 음성지원 안내서

이와 함께,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비, 서비스제공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해 현황을 공개하고 자체적인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제재규정의 강화를 통해 개선노력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대체자료 등의 개발을 통한 도서관 자료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안 특히, 웹을 활용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 육근혜, 도서관에서의 장애인서비스(서울 : 한국점자도서관, 2006), pp.40-41.

V. 결 론

대학의 장애인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대학도서관 시설 및 장비, 그리고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학도서관의 인식부족과 지원 미비로 장애인 시설 및 장비가 법률적 기반 및 설치기준에 따라 규격에 맞춰 설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비스도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서관 이용 및 서비스 홍보방안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장애인 학생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도서관은 교내 장애인 관련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관련 기관, 단체, 협회, 그리고 특수도서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 지원 전담사서를 지정해 수화교육, 장애인 안내방법 등과 같은 장애인 서비스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학생들의 요구 파악 및 장애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셋째,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안내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이용안내 제작 등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가 도서관 시설, 장비, 그리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지원시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보 및 피난설비 등을 비롯한 장애인 안내시설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